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 매뉴얼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사이트

- 관세청 FTA 포털(<http://yesfta.customs.go.kr>)
 - 원산지기준, 수출입세율,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안내 등
-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관세법령정보, HS정보(관세율표, 품목분류 사례) 등
-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 온라인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인증수출자 등
- 관세청 주관 YES-FTA 교육지원센터(www.yesftaedu.or.kr)
 - YES-FTA 전문교육(전과정 무료,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에 해당)
- 관세청 원산지 전산처리시스템(국제원산지정보원 운영, 관리)(<https://ftapass.or.kr>)
 - 무료 원산지 전산처리시스템 FTA-PASS
- 국제원산지정보원(www.origin.or.kr)
 - 연구보고서, FTA 무역리포트 등
-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아카데미(www.ftaedu.or.kr)
 - 원산지실무사, 원산지관리사 도서 구매, 교육 및 시험 등

본 매뉴얼은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 2016.07.01.]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령[시행 2018.04.30.]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시행 2017.12.01.]
-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시행 2017.12.29.]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시행 2107.12.29.]
-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시행 2018.05.03.]

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1-1. 인증수출자 제도	06
1-2. 인증수출자 제도 혜택	07
1-3. 인증수출자 종류	08
1-4. 인증수출자 인증심사 절차	09
1-5.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제출서류 목록	10

2

**인증신청
서류작성**

2-1. 인증신청 서류준비 한눈에 보기	12
① 완전생산기준	12
② 세번변경기준	15
③ 부가가치기준	16
④ 가공(특정)공정기준	17
2-2. 인증신청 준비서류 내려받기	19
2-3. 인증신청 서류작성	20
① 인증 신청서	20
② 원산지소명서	21
③ BOM(소요자재명세서)	22
④ 제조공정도	23
⑤ 원산지(포괄)확인서	24
⑥ 국내제조(포괄)확인서	25
⑦ 부가가치비율표	26
⑧ 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	27
⑨ 원산지증명서서명카드 및 작성대장	28
2-4. 원산관리전담자 요건확인 증빙서류	2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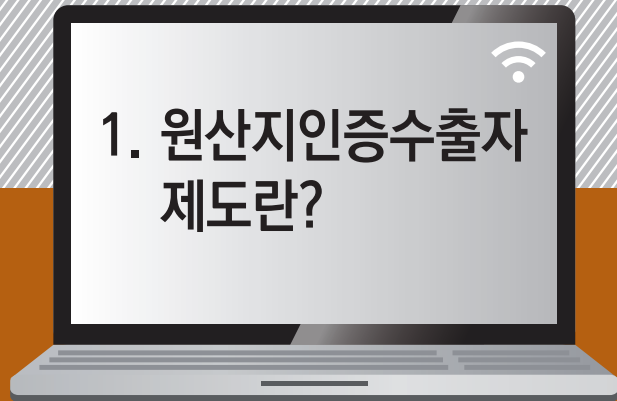
**인증신청
접수방법**

3-1. 온라인(UNI-PASS) 접수	32
3-2. 온라인(FTA-PASS) 접수	36
3-3. 오프라인 접수	43

4

알아두기

4-1.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46
4-2. 협정상대국 HS가 상이하다면?	48
4-3. 인증 & 자율점검 질문사례	52



1-1. 인증수출자 제도

1-2. 인증수출자 제도 혜택

1-3. 인증수출자 종류

1-4. 인증수출자 인증심사 절차

1-5.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제출서류 목록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1-1 인증수출자 제도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혜택을 부여

1.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2.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첨부서류의 제출 간소화

* **(유의사항)** 관세당국은 인증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원산지증명 능력을 확인해 주는 것일 뿐 업체가 관리하는 모든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로고 “대내외 홍보에 활용해 보세요!”

* AEX(Approved EXporter)

1-2 인증수출자 제도 혜택

- (한-EU FTA) 6,000유로 초과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필수
-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첨부서류 제출 생략

FTA	인증 전	인증 후
한-EU	•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6,000유로 초과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 신고서 작성 가능
한-EFTA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통상 Invoice신고 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통상 Invoice신고 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 수출신고필증 사본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 •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생략 및 자동발급(수리) • 현지확인 생략 가능
기타 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미적용	

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1-3 인증수출자 종류

- (업체별) 모든 FTA와 품목에 대하여 인증 효력이 있습니다.

- 업체에서 관리하는 모든 품목과 협정을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 '원산지 전산처리시스템(FTA-PASS 등)'을 보유하거나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로 종합적인 원산지관리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품목별) 특정 FTA와 품목에 대하여 인증 효력이 있습니다.

- HS 6단위 품목을 기준으로 인증 받은 협정만 활용 가능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 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5년	5년 (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인증 기관	본부세관(서울 · 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 기준	체약상대국별 원산지 증명·관리 능력 및 법규 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 증명·관리 능력

1-4 인증수출자 인증심사 절차

- **인 증 신 청** : 신청자가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세관에 신청
- **접 수** : 관할세관에서 접수(필수서류가 없을 경우 보완)
- **심사 및 보정** : 인증요건 충족여부 심사 및 미비서류 보완 요청
(국제원산지정보원 인증심사 예비조사 포함)
- **인 증** :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증 승인
- **사 후 관 리** : 인증요건 유지,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인증사항 변경신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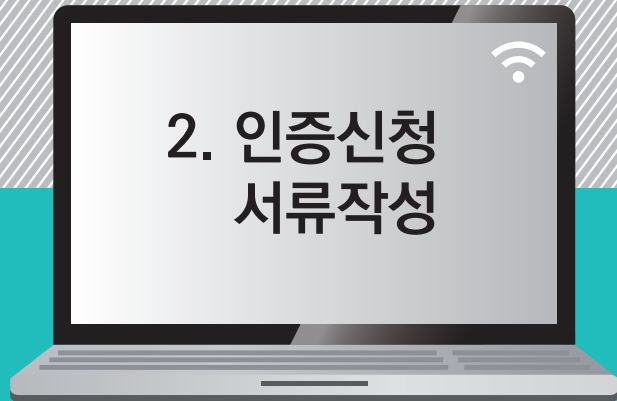


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1-5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제출서류 목록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신청서 2. 원산지소명서 2-1.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2-2. 제조공정도 2-3. 원산지(포괄)확인서 2-4. 국내제조(포괄)확인서 2-5. 부가가치비율 산출내역 2-6. 신청물품 및 원재료 단가 입증자료(수출신고 필증, 운임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등) 2-7. 임가공(위탁가공)계약서 2-8. 신청물품 품목번호 근거서류(품목분류 사전 심사 회신 공문, 관세사 품목분류의견서 등) 3.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 4.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5.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6.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6-1. 내부전담자(자격증 또는 교육요건 20점 이상) 6-2. 외부전담자(계약서, 자격증 등) 7. 원산지 전산처리시스템 보유 증빙자료 또는 원산지 관리 매뉴얼	1.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신청서 2. 원산지소명서 2-1.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2-2. 제조공정도 2-3. 원산지(포괄)확인서 2-4. 국내제조(포괄)확인서 2-5. 부가가치비율 산출내역 2-6. 신청물품 및 원재료 단가 입증자료(수출신고 필증, 운임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등) 2-7. 임가공(위탁가공)계약서 2-8. 신청물품 품목번호 근거서류(품목분류 사전 심사 회신 공문, 관세사 품목분류의견서 등) 3.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 4.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5.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6.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6-1. 내부전담자(자격증 또는 교육요건 10점 이상) 6-2. 외부전담자(계약서, 자격증 등)

- ※ 2-3 : 완제품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한국산 원재료 사용 등
 2-5, 2-6 : 부가가치기준,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 적용 등
 2-4, 2-7 : 생산과정 확인이 필요 할 경우(특정공정기준, 불인정공정 등)
 2-8 :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이 필요할 경우
 ※ 업체별 인증신청의 경우 수출통계 제출



2-1. 인증신청 서류준비 한눈에 보기

2-2. 인증신청 준비서류 내려받기

2-3. 인증신청 서류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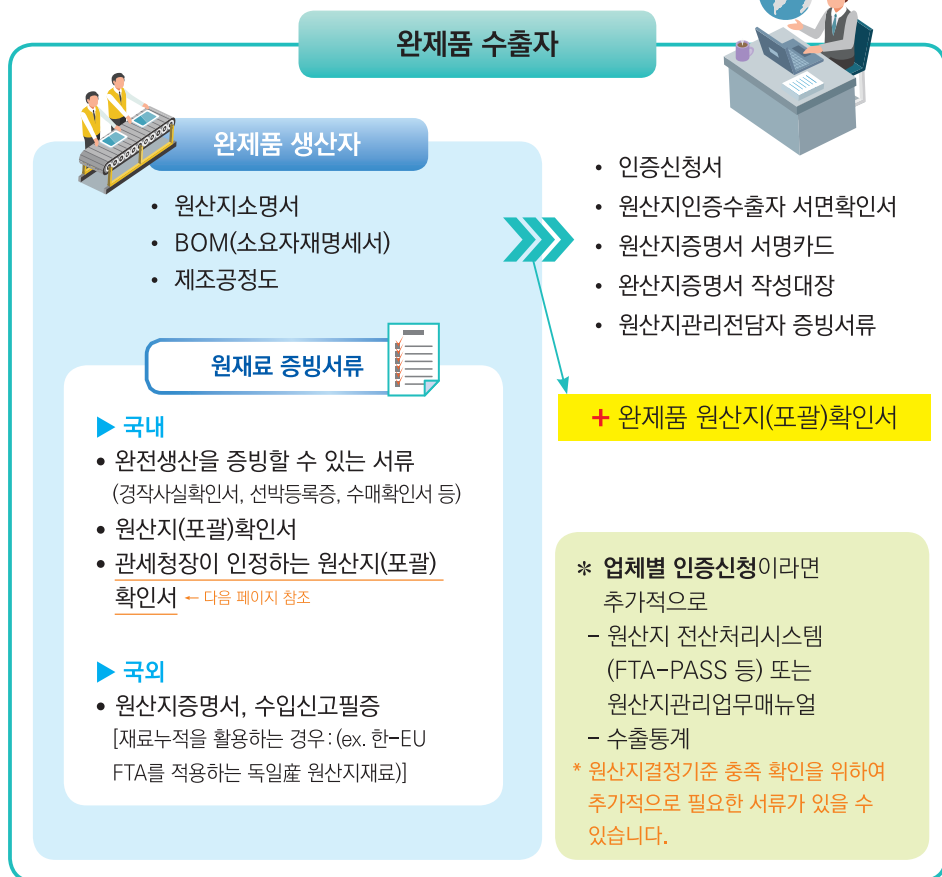
2-4. 원산관리전담자 요건확인 증빙서류

2

인증신청 서류작성

2-1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서류준비 한눈에 보기

- 원산지결정기준 : ① **완전생산기준(WO)**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 ✓ (목적) 농축수산물 생산자 및 제조자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FTA 활용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 ✓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2조제4항
- ✓ (품목) 농산물 : 1,028개 품목 / 수산물 : 81개 품목 / 축산물 : 5개 품목 / 전통식품 32개 품목

* 품목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별표 참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검색

구분	서류명	발급근거
농산물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②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③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④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⑤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	양곡관리법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2. 인증신청 서류작성

구분	서류명	발급근거
수산물	⑤ 물김 구매확인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매매방법)
	⑥ 마른 김 구매확인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매매방법)
	⑦ 수산물 품질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⑧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⑨ 수산물이력 추적관리 등록증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이력추적관리)
	⑩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축산물*	⑪ 축산물(소) 등급 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⑫ 축산물(돼지) 등급 판정확인서	
	⑬ 축산물(계란, 닭, 오리) 등급 판정확인서	
전통식품	⑭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 국내에서 완전생산되어 도축 및 등급판정 된 축산물에 한정

● 원산지결정기준 : ② 세번변경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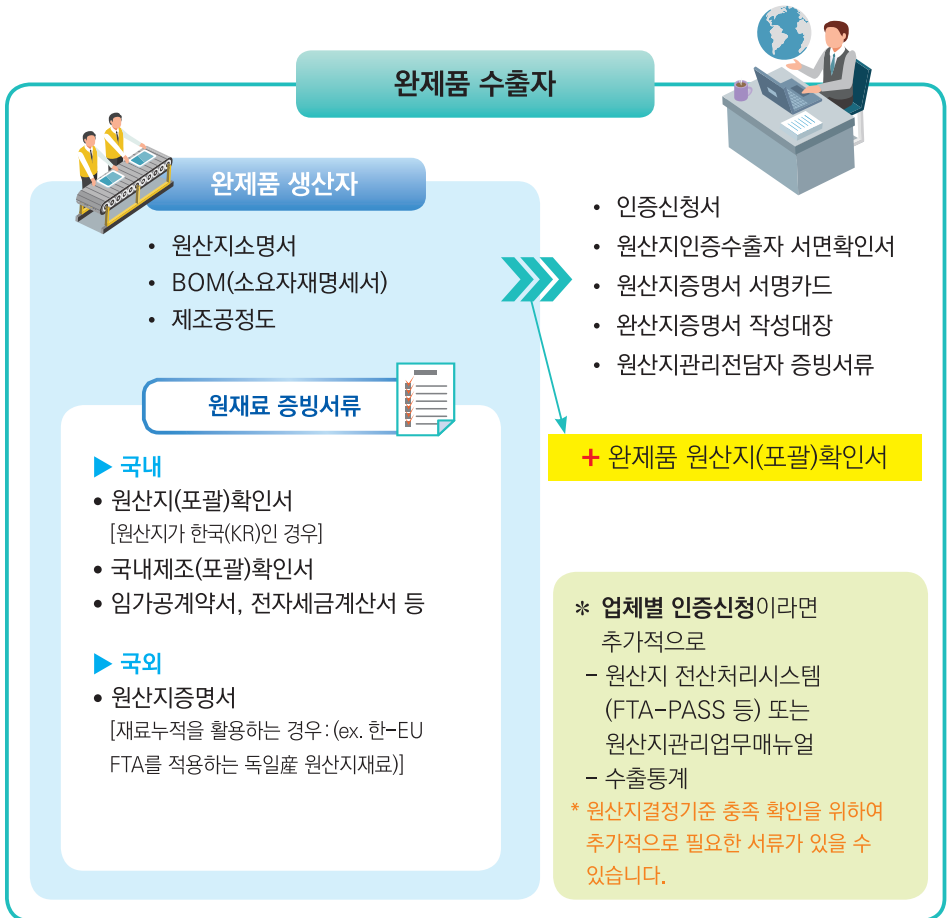


2. 인증신청 서류작성

● 원산지결정기준 : ③ **부가가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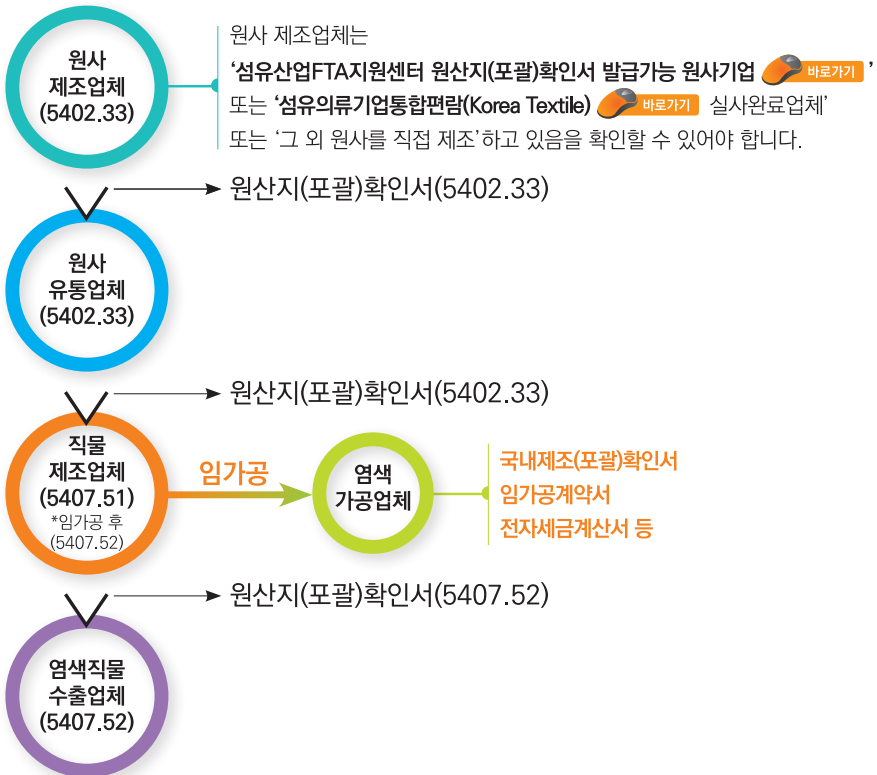
● 원산지결정기준 : ④ 가공(특정)공정기준



2. 인증신청 서류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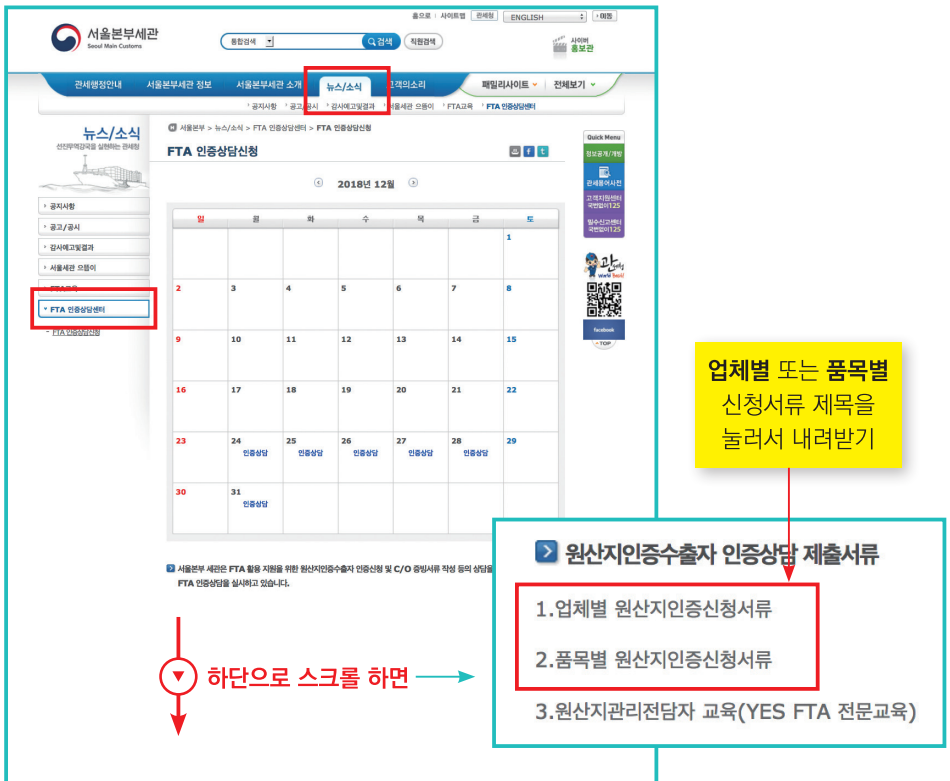
ex) 염색 직물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하려면?

- 품명 : 100%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염색 직물
- 품목번호(HS 6단위) : 제5407.52호
- 적용협정 : 한-EU FTA / 원산지결정기준 : 화학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2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준비서류 내려받기

- 관세법령정보포털 > 법령 > '자유무역협정' 검색 > 관련 법령, 고시에서 받기
- 서울본부세관  > 뉴스/소식 > FTA인증상담센터 > 화면 하단 제출서류



서울본부세관 Seoul Main Customs

뉴스/소식

FTA 인증상담신청

2018년 12월

업체별 또는 품목별
신청서류 제목을
눌러서 내려받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상담 제출서류

1. 업체별 원산지인증신청서류
2. 품목별 원산지인증신청서류
3.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YES FTA 전문교육)

하단으로 스크롤 하면

2. 인증신청 서류작성

2-3 ①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

본 신청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2쪽 중 제1쪽)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 일
------	-----	------	------

1. 신청 구분

신규인증 ☒	인증유효기간 연장 ☐
--	------------------------------------

2. 신청인

상호	(한글) 캐나다 (영문) Canada Co., Ltd.	사업자등록번호	211-82-00001
주소	(한글) 서울시 강남구 연주로 721 (영문) 721, Eonju-ro, Gangnam-gu, Seoul, Korea	대표자 성명	(한글) 김한국 (영문) Kim Hankook
전화번호	02-344-0001	팩스번호	02-344-0009
전자우편주소	canada@canada.com	인증번호	

3. 인증 요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여부	☐ 예 ☒ 아니오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생산 여부	☒ 예 ☐ 아니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상 비치 및 관리 여부	☒ 예 ☐ 아니오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 여부	☒ 예 ☐ 아니오

4. 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

연번	품목번호(HS No.)	품명	적용대상합계	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1	8509.40	가정용 믹서기	아세안	KR	RVC 40%

5. 원산지관리전담자

연번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1	홍길동	대리	해외영업	02-344-0002	02-344-0009	hong@tapaha.com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7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2014. 11. 10. 월 1 일

신청인: 김한국 (한글) 김한국
직인명판

관 세 청 장 기 하
서울 세 관 장

첨부서류

1. 원산지인증 신청목록(품목번호 6단위 기준)별 원산지증명서(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확인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 제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취료 없음
2.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10mm×297mm(직장지 80g/㎡(제출용종))

신청물품 :
HS 6단위를 기준으로
하나의 모델을 선정하여
인증 신청

원산지 :
'KR' 또는 '한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
1명 이상

신청인은 대표자로 작성

② 원산지소명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원 산 지 소 명 서

(2쪽 중 제1쪽)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가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수출자·생산자				
1. 수출자	상 호	㈜가나다	사업자등록번호	211-82-00001
	성 명	김한국	전화/팩스번호	02-344-0001
	주 소 (전자우편주소)	서울시 강남구 연주로 721(ganada@ganada.com)		
2. 생산자	상 호	㈜가나다	사업자등록번호	211-82-00001
	성 명	김한국	전화/팩스번호	02-344-0001
	주 소 (전자우편주소)	서울시 강남구 연주로 721(ganada@ganada.com)		

물 품 명 세				
3. 품명/규격	가정용 믹서기 / GND10			
4. 품목번호(HS No.)	8609.40			
5. 물품가격	가격조건	공 장 도가격(EXW) [] 본선인도가격(FOB) [√]	6. 원산지결정기준	RVC 40%
	금 액	40,000	7. 자유무역협정명칭	아세안
8. 주요생산 공 정	원재료 구매 및 검사 → 조립 → 검품 및 포장			

원재료명세서

9. 연번	10. 재료명	11. 품목번호 (HS No.)	12. 원산지	13. 가 격		14. 공급자 (생산자)
				수 량	가 격	
1	모터 ASS'Y	8601.10	미상	1	15,000	AAA
2	본체 케이스	8609.90	KR	1	3,000	(주)BBB
3	PCB	8634.00	미상	2	600	CCC
4	커터	8208.30	미상	1	200	DDD
5	립 ASS'Y	8609.90	KR	1	7,000	(주)BBB
15. 합 계	원산지재료(국산)				10,000	
	비원산지재료(수입산)				16,800	
	합 계				26,800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16. 원전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7. 세번법경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8.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부가가치비율 : 60.5%)		
19. 결합기준	예 []	아니오 []	20. 특정공정기준	예 []	아니오 []
21. 역외가공기준	예 []	아니오 []	22. 최소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3. 두적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4. 직접운송 여부	예 [√]	아니오 []
25. 기 타	예 []	아니오 []	26. 원산지 결정	충족 [√]	불충족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제출합니다.

작 성 자 : 홍길동
 직 위 : 대리
 상 호 및 주 소 : ㈜가나다 서울시 강남구 연주로 721
 작 성 일 : 2018 년 9 월 20 일

직인명판

서울세관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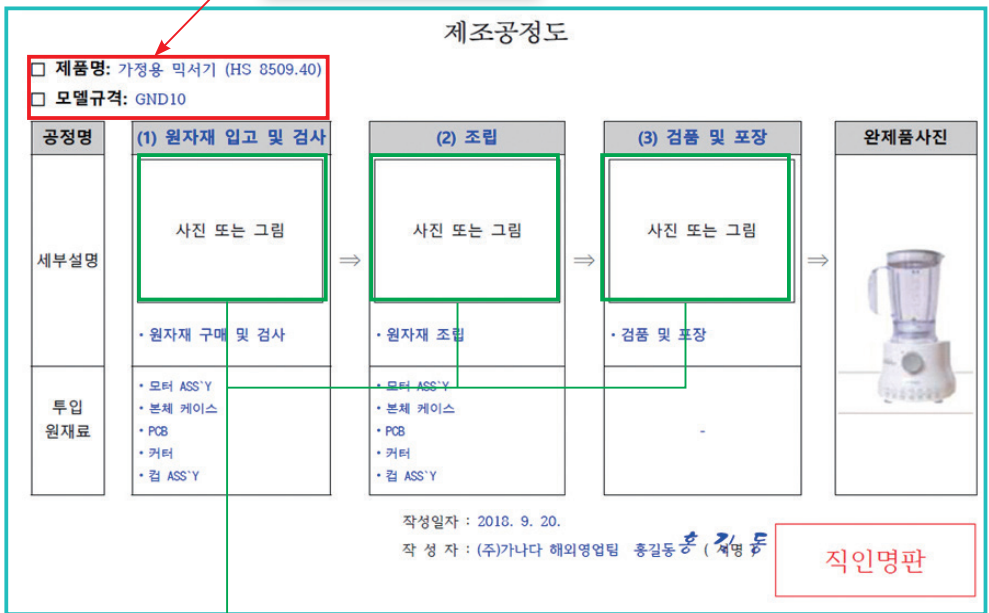
210mm×297mm(박상지 80g/㎡(재활용품))

원재료가 많은 경우
'BOM 참조'로
작성 가능

[13.가격]
부가가치기준
(또는 최소기준 등) 인
경우 작성

④ 제조공정도

'BOM'과 동일한
제품과 모델로 작성



공정사진은 필수사항이 아니나
공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작업처 확인이 필요하다면 함께 기재
ex. '가공(특정)공정기준'에 해당하는 물품

공정명·세부설명에는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주세요.

2. 인증신청 서류작성

⑤ 원산지(포괄)확인서

- 공급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주는 서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본 장서식비행용 양식 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X"를 기재합니다. (2쪽 중 제1쪽)

1. 발급번호(Reference No.) : 2018-B88-0001

2. 공급하는 자 (Supplier)	상호(Company Name)	㈜B88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120-81-00009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인호	전화번호(Tel)	00-000-0000
	주소(Address)	경기도 파주시 ○○	팩스번호(Fax)	
	전자우편주소(E-mail)	j@bbb.com	인증수출자 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3. 공급받는 자 (Supplied to)	상호(Company Name)	㈜가나다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211-82-00001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김한국	전화번호(Tel)	02-344-0001
	주소(Address)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1	팩스번호(Fax)	02-344-0009
	전자우편주소(E-mail)	ganada@ganada.com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s)

4. 연번 (S/N)	5. 자유무역 협정명칭 (Name of FTA)	6. 품목번호 (HS No.)	7. 품명·규격 ·Specification of Good(s)	8. 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9. 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10. 원산지 충족 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충족 (Y) (N)	11. 원산지 국가 (Country of Origin)	12. 원산지포괄 확인기간 (Blanket period [YYYY/MM/DD ~ YYYY/MM/DD])
1	아세안	8609.40	본체 케이스		CTH	[√] []	KR	18.1.1.-18.12.31
2	EU	8609.40	본체 케이스		CTH	[√] []	KR	18.1.1.-18.12.31
3	아세안	8609.40	캡 ASS'Y		CTH	[√] []	KR	18.1.1.-18.12.31
4	EU	8609.40	캡 ASS'Y		CTH	[√] []	KR	18.1.1.-18.12.3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origin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of "Enforcement Rules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작 성 자(Declarer) : 이승우
직 위(Title) : 과장
상호 및 주소(Company Name/Address) : ㈜B88 경기도 파주시 ○○
작 성 일(Date) : 2018 년 2 월 8 일

이승우
(서명 또는 인)(Signature)

발급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를 기재

같은 물품을 반복하여
공급한다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기재

작성자의 서명, 인장 또는
회사 직인

⑥ 국내제조(포괄)확인서

- 공급물품을 만들기 위해 수행한 공정을 확인해주는 서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내제조(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Inward Processing)

※ 작성방법을 알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 제1쪽)

1. 발급번호(Reference No.) : 2018-COLOR-03

2.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 (Blanket period) : 2018 년 1 월 1 일 부터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From YYYY/ MM/ DD to YYYY/ MM/ DD)

3. 공급하는 자 (Supplier)

상호 : 컬러염직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 강영직
강영직
주소(Address) :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전자우편주소(E-mail) : gang@colordyed.com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 789-45-612312
전화번호(Tel) : 02-789-7894
팩스번호(Fax) :

4. 공급받는 자 (Supplied to)

상호 : ABC텍스타일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 이태원
이태원
주소(Address) : 서울시 중로구 청계천로 123
전자우편주소(E-mail) : lee@abctext.co.kr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 123-12-123456
전화번호(Tel) : 02-111-2222
팩스번호(Fax) :

5. 공급물품 명세(Good(s) Statements)

연번 (S/N)	품목번호 (HS No.)	품명·규격 (Description·Specification of Good(s))	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가격 (Value)	주요 생산과정 (Production Process)
1	5407.52	100% POLYESTER WOVEN FABRIC			염색 및 포장

6. 재료 명세(Material Statements)

공급물품 연번 (S/N in Entry S)	재료연번 (S/N)	품목번호 (HS No.)	원산지재료 해당여부 (Originating Material(Y/N))	품명·규격 (Description·Specification of Good(s))	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가격 (Value)	비고 (Remark)
1	1	3204.11	N	염료			
	2	4822.90	N	지관			
	3	3923.29	N	폴리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inward processing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1 of 'Enforcement Rules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작 성 자(Declarer) : 강영직
직 위(Title) : 대표
상호 및 주소(Company Name/Address) : 컬러염직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작 성 일(Date) : 2018 년 1 월 2 일

(서명 또는 인)(Signature)
직인

210mm×297mm(약 8인치 50g/㎡(제출용종이))

같은 물품을 반복하여
공급한다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기재

공급물품을 만들기 위해
수행한 공정을 기재

공급물품의 해당연번에 사용된
원재료들을 기재

작성자의 서명, 인장 또는
회사 직인

2. 인증신청 서류작성

⑦ 부가가치비율표

● 수출신고필증 방식

제품의 부가가치 비율(수출신고필증 방식일 경우 예시)

☐ 제품명: 가정용 믹서기 (HS 8509.40)
☐ 모델규격: GND10
☐ 적용협정: 한-아세안 FTA

구분	역내산(원산지) 재료 가치의 합계	A = (비원산지 재료 가격의 합계)	B = FOB가격	부가가치비율 = $\frac{B-A}{B}$ (공제법 적용)
원/비율	10,000	15,800	40,000	60.5%

작성일자 : 2018. 9. 20.
작성 자 : (주)가나다 해외영업팀 홍길동 홍(서명)동

직인명판

● 원가계산서 방식

제품의 부가가치 비율(원가계산서 방식일 경우 예시)

☐ 제품명: 가정용 믹서기 (HS 8509.40)
☐ 모델규격: GND10
☐ 적용협정: 한-아세안 FTA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제조간접비	판매/일반관리비	이익	판매가격 (FOB)	역내부가가치비율(%) RVC
역내 (원산지)	역외 (비원산지)							
10,000	15,800	4,000	4,200	1,000	2,000	3,000	40,000	60.5%

작성일자 : 2018. 9. 20.
작성 자 : (주)가나다 해외영업팀 홍길동 홍(서명)동

직인명판

1) 재료비 기초가격 계상은 원정별 규정에 의함(원산지 재료비 가산요소, 비원산지재료비 공제요소), 원재료 구입비는 구입명세서, 세공계산서, 또는 수입신고필증 등 증명
 2) 직접경비(공장의 전기료·수도료·임대료, 포장비 등 생산관리비) 및 기타경비(내륙운송비, 부두이용료, 통관제비용 등)의 증명
 3) 수출판매가격은 원정별 규정에 의함(FOB, ECW, 조정가치)
 4) 역내부가가치비율 계산식 : (FOB-비원산지재료 가격) / FOB 가격

⑧ 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신청인	상 호	사업자번호
	가나다	211-82-00001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김한국	02-344-0001
	전자우편	팩스(FAX)
	ganada@ganda.com	02-344-0009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1	

상기 본인은 다음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후 발행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류) 일체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018 년 10 월 1 일

제 출 자

김 한국

김 한국
(인 또는 서명)

서울 세관장 귀하

직인명판

※ 동 서면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의 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자율증명에 필요한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박상지 80g/㎡(재활용품)]

인증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된 내용을
책임질 것을 약속하는
서류로 제출자는
대표자로 작성

* 인증신청 서류들은 거짓
없이 작성되어야 함!

* 서면확인서를 제출하면
원산지 자율증명에
필요한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 인증신청 서류작성

⑨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 작성대장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12. 29>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일련 번호	서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직권일자 및 사유	해제 일자 및 사유
1	김한국	-	대표	김한국	2016.11.1. 업무분장	
2	홍길동	해외영업	대리	홍길동	2016.11.1. 업무분장	
직인명판						

210mm×297mm(박상지 80g/㎡)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서명카드를 작성하여
보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산지
관리전담자'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작성 번호	2.작성 (서명)일	3.수출·입 신고번호 및 수리일	4.품명	5.품목번호 (HS No.)	6.수량/ 금액	7.원산지	8.거래 상대방	9.자유무역 협정명칭	10.원산지 결정기준	11.비고
16-00001	2016.12.20.	010-10-16-00000000/ 2016.12.20.	가장용 믹서기/ GND10	8509.40	100ea/ \$3,900	KR	P&P (독일)	한-EU	CTH	
직인명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근거로
**자율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작성하여 보관**

2-4 원산지관리전담자 요건확인 증빙서류

- (내부직원 · 외부)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 (내부직원)

**자격증만으로
원산지관리전담자 인정**
* 외부 위탁일 경우
계약서 필요

1. (국가공인자격) 원산지관리사
2.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관세청장과 협의한 FTA 교육 ← 다음 페이지 참조
- 관세, 상품학,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자격증당 2점, 최대 6점)
- 관세청 또는 관세사 등(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으로 부터 받은 자유무역협정 컨설팅(건당 5점, 최대 15점)

교육합계 : 업체별 20점 / 품목별 10점

➤ 원산지관리전담자가 되려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교육을 이수**

2. 인증신청 서류작성

-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관세청장과 협의한 FTA 교육”

원산지관리전담자 인정교육

(총 101 건 3/11 페이지)

번호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기관	첨부파일
81	[관세청 주관] YES FTA 전문교육 _ 수출기관 국제원산지정보원	2018-01-01 ~ 2018-12-31	국제원산지정보원	
80	[관세청 주관] YES FTA 전문교육 _ 수출기관 신관세법인	2018-01-01 ~ 2018-12-31	신관세법인	
79	국가별 FTA 활용	2018-01-01 ~ 2018-12-31	한국생산성본부	
78	전기전자산업과 FTA	2018-01-01 ~ 2018-12-31	한국생산성본부	
77	자동차부품산업과 FTA	2018-01-01 ~ 2018-12-31	한국생산성본부	
76	섬유 및 의류산업과 FTA	2018-01-01 ~ 2018-12-31	한국생산성본부	

관세청 FTA 포털 **바로가기**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관리 전담자 교육 배너 클릭

원산지관리전담자 인정교육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관리 전담자 교육

원산지관리전담자 인정교육

대한민국 경제영토의 확장 FTA

FTA 비즈니스모델
수출입기업지원센터
FTA 용어집
YES FTA 전문교육
YES FTA 전설형 사업
HS연계표
원산지관리전담자 인정교육
공익공제사

원산지관리전담자 인정교육

교육명 [관세청 주관] YES FTA 전문교육 _ 수출기관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일시/시간 2018-01-01 9시 00분 ~ 2018-12-31 24시 00분

교육기관 국제원산지정보원

연장권수 비교 참조

비고

- YES FTA 전문교육 일반분야 기본과정 : 12점, ○ YES FTA 전문교육 일반분야 심화과정 : 24점, ○ YES FTA 전문교육 미래인재양성과정 : 16점, ○ YES FTA 전문교육 FTA 활용전략과정 : 2점, ○ YES FTA 전문교육 특화분야 원산지검증과정 : 6점, ○ YES FTA 전문교육 특화분야 인출수출자격 : 6점, ○ YES FTA 전문교육 특화분야 FTA-PASS 과정 : 6점, ○ YES FTA 전문교육 특화분야 원산지증명서작성실무과정 : 6점, ○ YES FTA 전문교육 특화분야 품목분류과정 : 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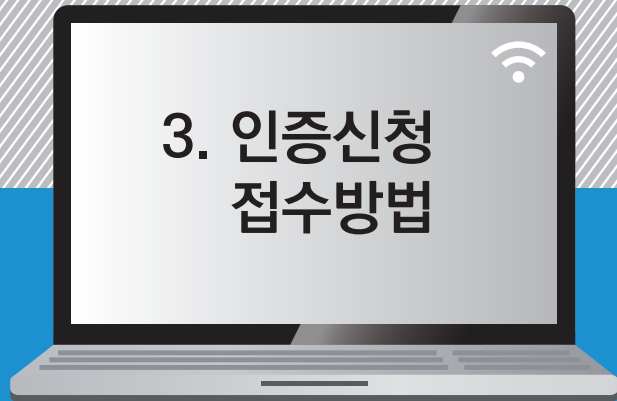
첨부파일 YES FTA (국제원산지정보원).hwp [12800 byte]

원산지관리전담자 인정교육

대한민국 경제영토의 확장 FTA

FTA 비즈니스모델
수출입기업지원센터
FTA 용어집
YES FTA 전문교육
YES FTA 전설형 사업
HS연계표
원산지관리전담자 인정교육
공익공제사

해당 연도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인정점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수
업체별 20점 / 품목별 10점
“관세청 주관 YES-FTA 전문교육은 전과정 무료!”



3-1. 온라인(UNI-PASS) 접수

3-2. 온라인(FTA-PASS) 접수

3-3. 오프라인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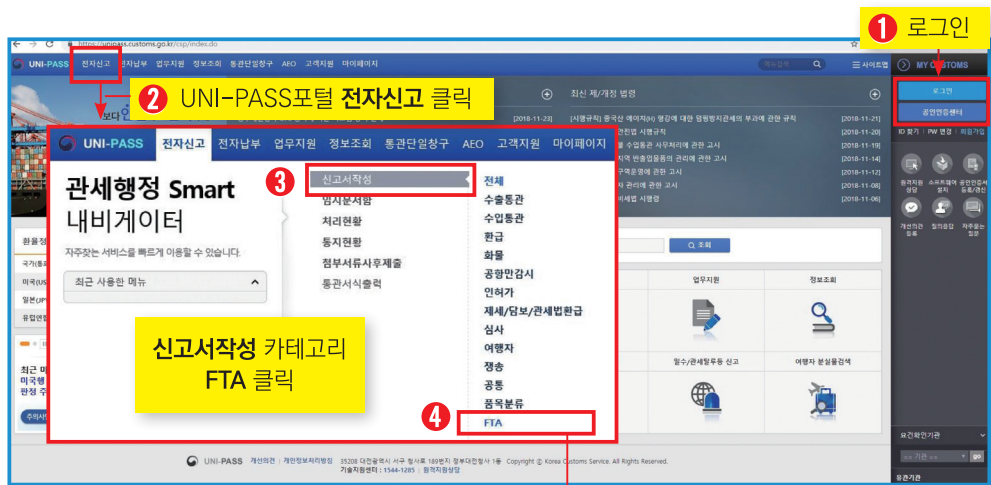
3

인증신청 접수방법

3-1 온라인(UNI-PASS) 접수

●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

- (사용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고객센터 > 사용자 등록 > 사용자 등록 안내 참고
- (사용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FTA



번호	업무구분	서비스명	서비스화일
1	FTA	FTA 원산지증명신청	서비스화일
2	FTA	원산지증명, 원산지증명 신청	서비스화일
3	FTA	원산지증명서	서비스화일
4	FTA	ROD	서비스화일
5	FTA	세관장사전통지 발급신청서	서비스화일
6	FTA	원산지확인신청서	서비스화일
7	FTA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연장신청서	서비스화일
8	FTA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연장신청서	서비스화일
9	FTA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연장신청서	서비스화일
10	FTA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연장신청서	서비스화일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규/연장신청서 제목을
클릭하여 신청화면으로
이동!

● 인증수출자 신청서 화면(1)

‘채번’을 누르면 자동으로
신청번호 생성

품목별인증수출자신청/연장신청서 ★

Home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FTA > 품목별인증수출자신청/연장신청서

*신청번호 --선택-- 17 **채번** *신청일자 2017-09-15

구분 ☒ 신규 ☐ 연장

신청인

*신청인명	*상호	*신청세관 서울세관(10)
법인유무 ☐ 법인단체 ☒ 사업장단체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영문)
*이메일주소	*주소	*주소(영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장1 사업자번호 사업장2 사업자번호 사업장3 사업자번호 사업장4 사업자번호 사업장5 사업자번호 사업장6 사업자번호 사업장7 사업자번호 사업장8 사업자번호 사업장9 사업자번호 사업장10 사업자번호

차점요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여부 예 ☐ 아니오 ☒

신청품목에 해당 법령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예 ☒ 아니오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상 비지 및 관리 여부 예 ☒ 아니오 ☐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원산지전문가 포함) 지정 및 운영 여부 예 ☒ 아니오 ☐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입력

‘인증신청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에 일괄신청 할 수 있음

3. 인증신청 접수방법

● 인증수출자 신청서 화면(2)

1. 돋보기를 선택하여 HS 6단위를 선택
2. 품명을 일반품명으로 수정
* 품명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HS 6단위' 용어가 등록되어 물품명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ex. 기타, 염색한 것)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
* '부가가치비율'은 원산지결정기준의 부가가치기준을 작성
(ex. 원산지결정기준이 MC 45%라면
- 원산지결정기준 'MC' / 부가가치비율 '45')

원산지 인증대상 신청서

*품명 *HS6단위부호 *적용대상업종 *원산지결정기준 부가가치비율(%) *원산지코드

가장용 의서기 850940 한-미세안 CTH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영역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홍길동

첨부파일

전체 8 건

제출구비서류	첨부파일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
☐ 자재명세서	☐ 자재명세서
☐ 제조증명도	☐ 제조증명도
☐ 원산지포괄확인서	☐ 원산지포괄확인서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교육이수 증명서	☐ 교육이수 증명서

* 첨부파일은 최대 10개, 용량 총합 40MB로 제한됩니다.
* 대용량인 경우 신고서 전송 후 메뉴 : 전자신고 > 첨부서류사용제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한)을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신청내역은 품목별 인증업무 수행세관 문의)
1. 원산지인증 신청품목(품목번호 6단위 기준)별 원산지소명서(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 제출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제출합니다)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행정 또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출합니다.

작성 완료

원시저장 앞글전송저장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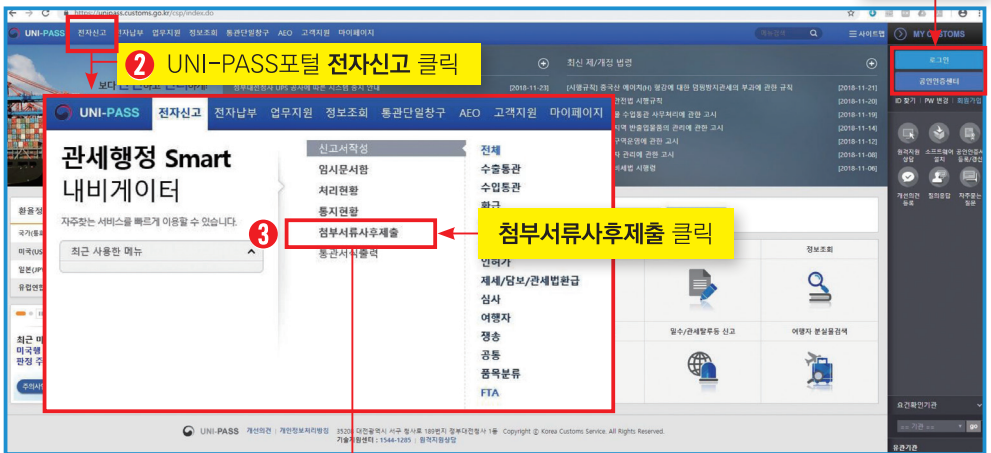
'+행추가'로 제출할 서류를 선택하고
'찾아보기...'로 파일을 첨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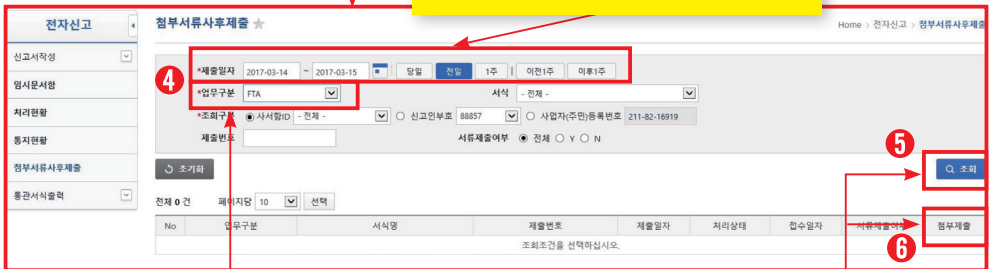
- (첨부서류사후제출)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전자신고 > 첨부서류사후제출 > 업무구분 'FTA' > 조회 > 첨부제출 항목의 '제출' 메뉴를 누르면 팝업창이 나오고 '파일추가', '항목제거' 등으로 보완

1 로그인



빠른 검색을 원한다면 조회기간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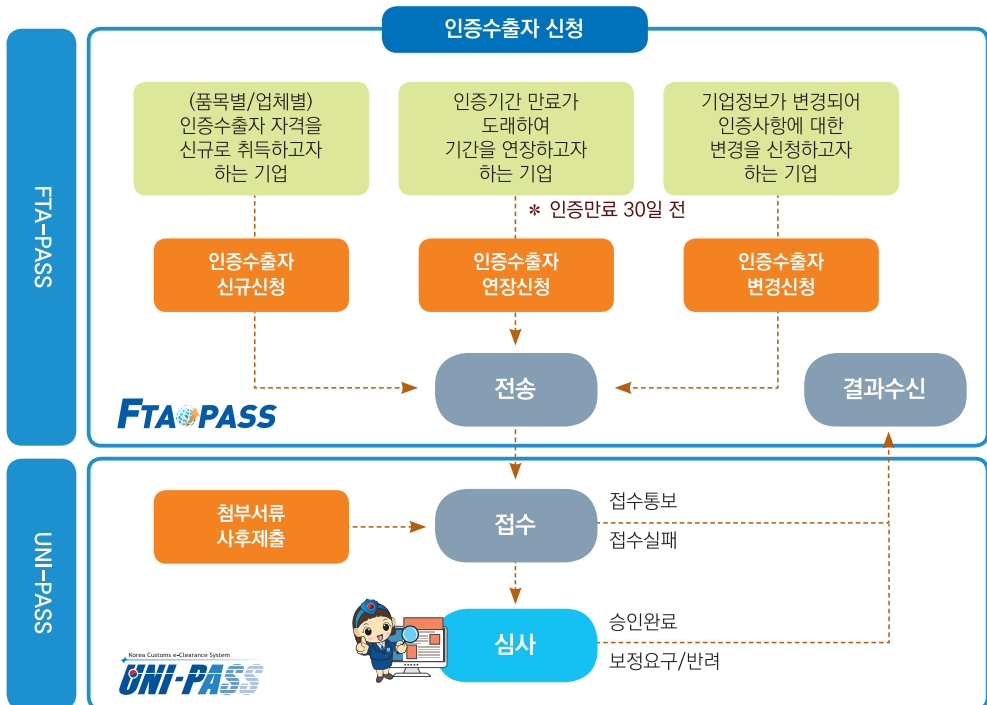
업무구분 : FTA

조회 후 첨부제출

3. 인증신청 접수방법

3-2 온라인(FTA-PASS) 접수

- FTA-PASS를 사용하고 있다면 FTA-PASS에 등록되어 있는 판정정보를 활용하여 인증수출자 신청 가능





3. 인증신청 접수방법

- ‘UNI-PASS’ 접수 화면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번’을 누르면 자동으로
신청번호 생성

종목별인증수출자신청

종목별 인증수출자 신규/연장 신청서

신청번호: 0020118 채번 신청일자: 2018-12-05

구분: ☒ 신규 ☐ 연장

신청인

신청인명 (50)	정보원	신청세관	[010]서울세관
상호 (100)	서울FTA이행지원센터A	상호(영문) (100)	Seoul FTA Implementation Support Center.
법인유무	☐ 법인단위 ☒ 사업장단위	사업자번호 (12)	211-82-16919
대표자 성명 (50)	김서울	대표자 성명(영문) (50)	SEKIM
이메일주소 (50)	FTAPASS02A@origin.or.kr		
주소 (5, 150)	0605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21번지(논현2동 71)		
주소(영문) (150)	721, Eonju-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전화번호 (14)	02-3445-6751	팩스번호 (14)	02-3445-6751
사업장1 사업자번호 (12)		사업장2 사업자번호 (12)	
사업장3 사업자번호 (12)		사업장4 사업자번호 (12)	
사업장5 사업자번호 (12)		사업장6 사업자번호 (12)	
사업장7 사업자번호 (12)		사업장8 사업자번호 (12)	
사업장9 사업자번호 (12)		사업장10 사업자번호 (12)	

제출요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여부	☐ 예 ☒ 아니오
신청품목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이상없음 ☐ 이상있음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상 비지 및 관리 여부	☒ 이상없음 ☐ 이상있음
원산지관리관급자(외부 원산지전문가 포함) 지정 및 운영 여부	☒ 이상없음 ☐ 이상있음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입력

● 판정이력 불러오기 > 인증신청물품 선택 > 선택물품 적용

판정이력불러오기

자정보건

입제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여부 ☐ 예 ☒ 아니오

신청물품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이상없음 ☐ 이상있음

원산지증명서 작성태양 비지 및 관리 여부 ☒ 이상없음 ☐ 이상있음

원산지관리연장자(여부 원산지전문가 포함) 지정 및 운영 여부 ☒ 이상없음 ☐ 이상있음

원산지 인증대상 산하물품

물품정보 조회

· 적용협정 [전체] · 물품번호 · 물품명 · 세번 · 총액여부 [조회]

· 생산기간 [년월일] · 매출지 [입력/연간/계리] · HS7문년도 [연도/계리]

· 매출기간 [년월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연장기간 2018-11-05 ~ 2018-12-05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검색속도가 느린 경우 물품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적용협정	물품번호	물품명	규격	단위	기준년도	세번	생산일자	매출처	매출일	판정일시	원산지결정기준
1	한-EFTA SP-070-10	손톱깎이	M-SILVER	KG	HS2012	821420	2018-03	한라산	2018-03	2018-12-04 13:34	CTH(CTH) (총)
2	한-EU SP-070-10	손톱깎이	M-SILVER	KG	HS2007	821420	2018-03	한라산	2018-03	2018-12-04 13:34	CTH(CTH) (총)
3	한-뉴질랜드 SP-070-10	손톱깎이	M-SILVER	KG	HS2007	821420	2018-03	한라산	2018-03	2018-12-04 13:34	C(CO) (총)
4	한-미국 SP-070-10	손톱깎이	M-SILVER	KG	HS2012	821420	2018-03	한라산	2018-03	2018-12-04 13:34	PSR(CO) (총)
5	한-베트남 SP-070-10	손톱깎이	M-SILVER	KG	HS2012	821420	2018-03	한라산	2018-03	2018-12-04 13:34	CTC(CO) (총)
6	한-싱가포르 SP-070-10	손톱깎이	M-SILVER	KG	HS2012	821420	2018-03	한라산	2018-03	2018-12-04 13:34	CTC(CO) (총)
7	한-아세안 SP-070-10	손톱깎이	M-SILVER	KG	HS2012	821420	2018-03	한라산	2018-03	2018-12-04 13:34	CTH(CTH) (총)
8	한-인도 SP-070-10	손톱깎이	M-SILVER	KG	HS2007	821420	2018-03	한라산	2018-03	2018-12-04 13:34	CTSH + RVC 3
9	한-중국 SP-070-10	손톱깎이	M-SILVER	KG	HS2012	821420	2018-03	한라산	2018-03	2018-12-04 13:34	PSR(CTH) (총)
10	한-칠레 SP-070-10	손톱깎이	M-SILVER	KG	HS2012	821420	2018-03	한라산	2018-03	2018-12-04 13:34	B(CO) (총)
11	한-캐나다 SP-070-10	손톱깎이	M-SILVER	KG	HS2012	821420	2018-03	한라산	2018-03	2018-12-04 13:34	C(CTH) (총)
12	한-타이 SP-070-10	손톱깎이	M-SILVER	KG	HS2007	821420	2018-03	한라산	2018-03	2018-12-04 13:34	CTH(CTH) (총)
13	한-페루 SP-070-10	손톱깎이	M-SILVER	KG	HS2007	821420	2018-03	한라산	2018-03	2018-12-04 13:34	C(CTH) (총)
14	한-호주 SP-070-10	손톱깎이	M-SILVER	KG	HS2012	821420	2018-03	한라산	2018-03	2018-12-04 13:34	PSR(CO) (총)

1 ~ 14 / 14

Page 1 of 1

100

클리어판정

적용 적용&닫기 닫기

판정이력 불러오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원산지판정 되어 있는 인증신청 할
물품(협정)을 선택

‘적용’ : 물품을 적용한 상태를 팝업창
유지

‘적용&닫기’ : 물품을 적용하여 팝업창을
바로 닫기

‘닫기’ : 팝업창 닫기

3. 인증신청 접수방법

- 신청물품, 원산지관리전담자 정보까지 확인 후 ‘저장’ 선택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원산지 인증대상 신청물품									
No	품명 (200)	HS6단위번호 (6)	적용대상협정	원산지결정기준	부가가치비율 (%)	원산지	소명서		
1	손톱깎이	821420	한-EU	002 CTH		한국	작성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내역							
No	성명 (50)	직위 (20)	소속부서 (100)	전화번호 (14)	팩스번호 (14)	이메일 (50)	
1	정보원	대리	해외영업	02-3445-6749		fta1@origin.or.kr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제6항)에 따라 중독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상세내역은 품목별 인증업무 수행세관 문의)**
 1. 원산지인증 신청품목(품목번호 6단위 기준)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
 2. 원산지확인서 (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첨부서류 제출방법** : 신고서 전송 후 [유니팩스] → 전자신고 → 첨부서류사후제출 메뉴를 이용하십시오. (첨부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반려' 처리됩니다.)

※ **세관별 연락처**
 - 인천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총괄과 032-452-3166
 - 인천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1과 032-452-3163
 - 서울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4과 02-510-1881
 - 부산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과 051-620-6632
 - 대구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과 053-230-5251
 -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53
 -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5

※ **소요시간**
 - 20일 이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 ~ 18조 참조)

도움말 목록으로 초기화 **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확인

작성된 정보를 확인 후 저장

- 발급신청 항목의 '전송' > 팝업창 '확인' > 유니패스 접속 '첨부서류사후제출'

품목별인증수출자신청

신청구분: 전체 | 제출번호: | 기간설정: 신청일자: 2018-09-05 | 2018-12-05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검색

진행상태: 전체 | UNI-PASS 결과확인 | 인증사설 | 결과정보문서 자동업로드

전송

신청구분	등록일	신청일	제출일	신청번호	통보일	진행상태	결과통보	발급사항	복사
1	신규	2018-12-05 15:20:2	2018-12-4	00201180000001U		대기	전송		

‘대기’ : 작성된 신청내역을 유니패스(UNI-PASS)로 전송하기 전 상태

‘접수중’ : 유니패스(UNI-PASS)에 정상 접수

‘접수실패’ : 신청내역에 오류가 있어 접수실패된 것으로 검토 필요

틀림 메시지

작성하신 인증수출자 신청 내역이 관세청 전자통관사이트(UNI-PASS)로 전송됩니다.
전송 후 FTA-PASS에서는 전송상태만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취소하실 경우,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수출자 신청내역을 전송하시겠습니까?

1 확인 취소

확인

1 - 1 / 1

Page: 1 of 1

선택식별 | 도움말

※작성 전 확인사항: UNIPASS 아이디, 전자문서함아이디, 신고인보호 입력여부(시스템관리) 기업정보 매뉴얼 | 신규/연장신청

2

필수!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하여 원산지소명서, BOM 등 서류를 첨부

* 온라인(UNI-PASS) 접수 - '첨부서류사후제출' 참조

3. 인증신청 접수방법

- UNI-PASS결과수신(관할세관에서 인증 승인) > 진행상태 '심사완료'

UNI-PASS결과수신

The screenshot shows the '품목별인증수출자신청' (Item-specific Export Certification Application) page. A red box highlights the '진행상태' (Progress Status) dropdown menu, which is set to '심사완료' (Review Complete). Another red box highlights the '심사완료' (Review Complete) status in the table. A yellow callout box explains that when the status is '심사완료', the system automatically registers the certification information in the FTA-PASS system.

신청구분	등록일	신청일	계출일	신청번호	통보일	진행상태	결과통보	발급신청	복사
1	신규	2018-12-05 15:20:20	2018-12-05	00201180000001U	20181205171345	심사완료	승인		연장발급 변경발급

진행상태가 '심사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FTA-PASS 기업정보에 인증정보가 등록
* 시스템관리 > 기업정보 > 인증수출자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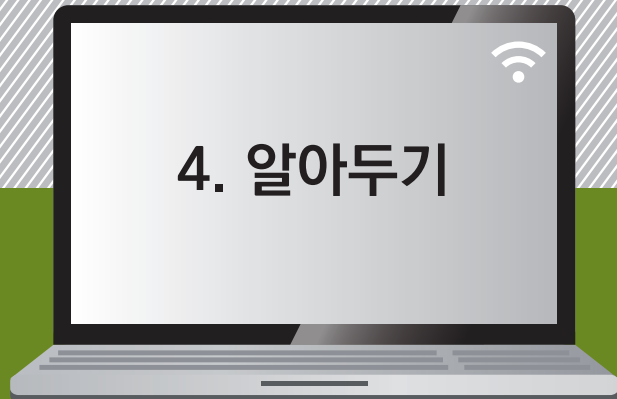
인증 승인은 '인증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보정기간은 제외)'

3-3 오프라인 접수

- 각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및 평택직할세관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제출**
 - **인천본부세관(FTA1과)** : 인천 중구 향동 7가 1-18 인천본부세관 제2별관 2층(우편번호 22346)
 - **서울본부세관(FTA4과)**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본부세관 별관3층 (우편번호 06050)
 - **부산본부세관(FTA과 인증계)** :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우편번호 48940)
 - **대구본부세관(FTA과 인증계)** :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 합동청사 4층(우편번호 42768)
 - **광주본부세관(통관지원과 FTA계)**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 합동청사 10층(우편번호 61011)
 - **평택직할세관(통관지원과)**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5 (우편번호 17962)

* 우편물에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서류 재중> 을 표기하여 내용물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우편 발송 전 관할세관을 통하여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4-1.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4-2. 협정상대국 HS가 상이하다면?

4-3. 인증&자율점검 질문사례

4 알아두기

4-1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번호를 결정하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 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는 제도

- 관세평가분류원  > 민원서비스 > 품목분류

신청권자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신청시기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신청방법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신청 품목당 수수료 3만원 납부

●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출서류

(필수)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필수) 물품설명서

(필수) 신청물품의 견본

원 칙	신청물품의 견본 제출 - 벌크상 : (분말)300 ~ 1kg / (액상) : 200ml 이상 - 소매포장(식품) : 2점 이상/ 의류 및 공산품 : 1점 이상
예 외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아래의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 견본 미제출사유서/대체사진 3매(컬러)

(필수) 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 물품설명서에 필수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증빙서류

품목 구분	물품설명서 필수기재사항	증빙서류
과채소가공품	가공한 과일의 경우 브릭스(Brix) 값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조제식료품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구체적인 용도설명	성분표
...	...	...

4. 알아보기

4-2 협정상대국의 HS가 상이하다면?

- 원칙적으로 인증수출자는 우리나라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인증
- 다만 협정상대국에서 품목번호를 다르게 운영한다는 것을 공식적인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협정상대국 품목번호도 인증
 - 따라서 **우리나라 품목번호(원칙)와 협정상대국 품목번호(추가) 인증 필요**
 - *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553(개정 2018.06.09.)
 - 협정상대국 품목번호를 인정하는 공식서류
 - 가) 수입신고필증
 - 나) 품목번호 확인서
 - 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 라)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 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협정상대국 HS 상이사례

– 아래 사례들은 참고용 자료이므로 인증신청 시에는 ‘우리나라 세관, 상대국 수입자, 협정상대국의 공식서류 등’을 통한 사전준비 및 확인이 필요

협정	품명	HS		증빙서류
		한국	협정상대국	
EU	어류 추출물의 성분을 오일로 만들어 캡슐에 충전한 건강기능 보조식품	2106.90	1603.0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EU/중국	조미 김	2106.90	2008.99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EU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필름	3919.90	3921.19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아세안 (태국)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필름에 착색·인쇄하여 만든 접착성이 없는 플라스틱 필름	3920.62	3926.9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중국	플라스틱으로 만든 원통형의 뚜껑과 마개가 있는 용기	3923.30	3924.1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아세안 (인도네시아)	인테리어 장식용 몰딩	3925.90	3916.9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중국	플라스틱 재질의 ADAPTER	3926.90	3923.4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중국	오일의 유출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실(Seal)	4016.93	8487.9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4. 알아보기

협정	품명	HS		증빙서류
		한국	협정상대국	
아세안 (인도네시아)	가황한 고무로 만든 병마개	4016.99	4014.9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인도	PET필름에 특정무늬가 인쇄 되어 있는 것으로 문구류 등의 제품에 전사시키는 전사지	4908.90	3926.9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아세안 (태국)	콘크리트 벽이나 철골빔과 중간빔에 용접상으로 설치되어 엘리베이터 균형추(Counter Weight)의 승강을 안내하는 GUIDE RAIL/GUIDE TRACK	7308.90	8431.31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EU	절삭 가공 등에 사용되는 호환성 공구	8207.90	6909.12	독일 세관 품목분류 시정명령서
중국	실외의 공기를 흡입하여 산소만 실내로 공급하는 기기	8405.10	8419.6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중국	온도 상승 방지를 위하여 연소실 열량을 확인하여 제어하는 전기 식의 온도 제어장치	8416.90	8417.9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중국	의료기기에 조립되어 CHAIN SPROCKET 구동시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기어	8483.40	8483.9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협정	품명	HS		증빙서류
		한국	협정상대국	
베트남	기기 내부의 온도를 변화시켜 음식을 조리 또는 가열하는 기계	8514.10	8419.81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EU	VGA단자 또는 HDMI단자 등을 통해 컴퓨터나 DVR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LCD MONITOR	8528.51	8528.72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아세안 (인도네시아)	접속단자에 케이블이나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터미널	8536.90	8537.2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아세안 (인도네시아)	치과에서 사용하는 환자용 의자와 치료에 필요한 각종의 기기들이 일체형으로 제시된 치과용 의자	9018.49	9402.1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중국	정전용량을 측정하는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9030.39	9031.80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4. 알아보기

4-3 인증수출자 인증 & 자율점검 질문사례

● 인증수출자 인증 Q&A

Q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고 승인 받기(인증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인증 승인은 '인증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보정기간은 제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FTA관세법)[시행 2017.12.29.]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시행 2017.12.29.]

Q HS 6단위는 동일한 다양한 모델을 생산하는 경우 인증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인증수출자 인증은 HS 6단위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대표 모델을 선정하여 인증신청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대표 모델로 인증을 받더라도 추후 원산지증명서(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는 모든 모델의 원산지 관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Q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관련 교육을 받았는데 기한 없이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관련 교육은 교육 종료일이 인증 신청일로 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

* 외부 원산지관리전담자 :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내부 원산지관리전담자 :

1)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2) 교육 이수(품목별 10점, 업체별 20점 이상)

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관련 교육 이수(교육 종료일이 인증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② 관세, 상품학,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격증 : 자격증당 2점(최대 6점)

③ 관세청 또는 관세사 등(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 건당 5점(최대 15점)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시행 2017.12.29.]

Q 6개월전 재직하던 회사(A)에서 FTA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한 회사(B)에서 원산지관리전담자가 되려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교육 점수는 FTA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직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 이수자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산지관리 전담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알아보기

Q 원산지 전산처리시스템(FTA-PASS)을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 교육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관세청은 'YES-FTA 전문교육'을 통하여 FTA-PASS 활용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FTA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PASS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무료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현장지원'으로 사용자를 직접 방문하여 사용법 안내 및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 YES-FTA 교육지원센터  / FTA-PASS 
국제원산지정보원은 YES-FTA 전문교육 수행기관, FTA-PASS 운영 및 관리기관입니다.

●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Q&A

Q 인증수출자 자율점검이란 무엇인가요?

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 후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관할세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시행 2017.12.29.]
- (서식 내려받기) 관세법령정보포털  > 법령 > '인증수출자' 검색 및 클릭 > 별표/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자율점검 결과 통보서 및 [별지 제6호서식] 자율점검표

Q 인증수출자 자율점검은 언제 제출하나요?

A 인증 유효기간(5년)동안 총 2회 실시하게 되며, 자율점검을 제출해야 할 시기가 되면 관할세관에 인증수출자로 등록된 주소, 이메일 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시행 2017.12.29.]

- 1회차 :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2회차 :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

Q 인증 취득 후 회사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인증 취득 후 '상호, 대표자, 주소, 원산지관리전담자'의 변경이 있다면 지정된 서식으로 인증 관할세관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품목번호 오류가 있거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품목의 변경 등 인증 사항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시행 2017.12.29.]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FTA관세법)[시행 2017.12.29.]

- [서식 내려받기] 관세법령정보포털  바로그기 > 법령 > '자유무역협정' 검색 > 시행규칙 (FTA관세법) > 별표/서식 > **[별지 제27호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 매뉴얼

발 행 일 2019년 1월

발 행 처 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205번길 8
TEL : 031)6000-701~3 / FAX : 031)6000-704
<http://www.origin.or.kr>

디자인·인쇄 (주)협동문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 매뉴얼」에 게재된 글과 편집
내용의 무단복제 및 모방을 금합니다.

